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설 의료기관 휴폐업 절차 강화〉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535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8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종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2.

(3) 회 부 일 : 2024. 8.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

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휴·폐업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

인, 준정부기관 등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권자로 규정하고 있음.¹⁾

- 국가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학병원 등 일반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 국립재활원·국립정신병원 등 특수질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 국립경찰병원·군병원 등 특수대상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 등 총 54개소이고, 소관 부처는 근거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임.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각 시·도 또는 군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시·도립 또는 군립병원 등 총 144개소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설 의료기관 현황 >

설립자	의료기관	근거법령	소관부처	기능
국가 (54)	국립재활원(1) 국립정신병원(5) 국립소록도병원(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	특수질환중심
	국립경찰병원(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특수대상중심
	국립법무병원(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	특수질환중심
	군병원(15)	국방 환자관리 훈령	국방부	특수대상중심
	국립결핵병원(2)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질병관리청	특수질환중심
	국립교통재활병원(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특수질환중심
	국립중앙의료원(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반진료중심
	국립암센터(1)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특수질환중심
	국립대학병원(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반진료중심

1)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설립자	의료기관	근거법령	소관부처	기능
	국립대학병원분원(6) 국립대학치과병원(7) 국립대학한방병원(1) 국립대학전문센터(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특수질환중심
지방 자치 단체 (144)	지방의료원(35) 지방의료원분원(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반진료중심
	권역재활병원(5)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특수질환중심
	시·도/군립병원(102)	시·도/군 조례	행정안전부	혼재

주: 괄호 안 숫자는 의료기관 개소수(2023년 12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23년 공공의료기관현황」,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2024. 8. 30., pp. 11~12.

□ 개설 및 휴·폐업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종류(의원급/병원급)에 따라 개설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²⁾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³⁾ 의료기관 개설자가

2)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3. 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휴·폐업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한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서 개설 및 폐업·해산시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⁴⁾

- 동 조항은 진주의료원이 누적부채 급증과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폐업(2013. 2. 26. 폐업방침 발표, 2013. 5. 29. 폐업)한 사례를 계기로 하여 신설된 조항으로(2013. 8. 13. 개정),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 진료사업, 감염병 등 질병 관리, 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 기능 등을 담당하는 공공의료 기관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설 및 폐업시 국가 전체의 보건의

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④ ~ ⑥ (생략)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② · ③ (생략)

[본조신설 2013. 8. 13.]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생략)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 9. (생략)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 12. (생략)

료정책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승인·인가 등의 방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협약’하도록 한 것임.⁶⁾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1개월 이상의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인바,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설 의료기관이 가지는 공공의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휴·폐업이 미치는 영향을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 측면에서 검토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휴·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 중에서도 기능이나 목적, 국가재정지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공의료차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하여 휴·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4207호) 검토보고(2013.4.),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제315회 국회(임시회) 제9차 전체회의,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참조.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모든 의료기관까지 휴·폐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함.

2) 대한간호협회(찬성)

-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및 그 가족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3)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공공의료기관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4)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의료기관 휴업(1개월 이상)·폐업 현황
-------------	------------------------------

○ 설립주체별

(단위 : 개소)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폐업	휴업	폐업	휴업	폐업	휴업	폐업	휴업
합계		13	2	3	3	4	1	3	1
국가	국립	3	2	1			1	1	
	군병원			1					
지자체	시도립	7		1	1	1			
	시군구립	2				2		2	1
	지방의료원	1			1	1			

자료: 보건복지부

○ 종별

(단위 : 개소)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폐업	휴업	폐업	휴업	폐업	휴업	폐업	휴업
합계		13	2	3	2	4	1	3	1
종합병원									
병원		7		1	1	1			
요양병원		4				3		2	
정신병원									
의원		1	1	1	1		1	1	
치과병원									
치과의원		1	1	1					
조산원									
한방병원									
한의원									1

자료: 보건복지부